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9월 말까지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위반사항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2인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단속내용	금액
범칙금	음주운전	단순음주시 10만원 측정불응시 13만원
	약물 영향 등 정상운전 불가시	10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승차 정원(1인) 초과	4만원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3만원
과태료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1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함께 지켜요!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 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경찰청

✓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
(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출처 : 경찰청

전동킥보드도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차선을 지키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호등, 횡단보도, 일방통행등의 교통표지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한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